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, 4공단 투자유치지원, 공단 배출업소 지원 및 민방위 경보시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정원으로 조정.
-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되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요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.

3. 주요내용

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정원 증원 조정 - 15명 : 1,316명 ⇒ 1,331명
 - 차량등록사업소 - 1소 2담당 : 12명(민원봉사과 차량등록담당 △6)
 - 4공단 투자유치 지원 : 3명
 - 오리사육장 시설물 관리인력 : 4명
 - 공단배출업소 지원인력 보강 : 1명
 - 민방위경보시설 지원인력 보강 : 1명
- 한시기구 및 정원 존속기한 연장
 - 4개반 : 7명 ⇒ 2004. 12. 31.

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- 국명칭 변경
 - 생활복지국 ⇒ 복지환경국
 - 도시건설국 ⇒ 건설도시국

○ 국 직제순위 변경(주무과)

- 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 ⇒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
- 경제통상국 경제진흥과 ⇒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
- 도시건설국 도시과 ⇒ 건설도시국 건설과

○ 과 조정 및 통폐합

- 허가과 + 민원봉사과 ⇒ 허가민원과
- 환경위생과와 폐기물관리과 직제 조정 ⇒ 환경보호과, 생활위생과
- 도시과를 분리 ⇒ 도시과, 공원녹지과(신설)
- 차량등록사업소와 인동보건지소를 신설

4. 참고사항

- 도 행정 12200-11991(2002.11.30)기구, 정원 승인.
- 도 행정 12200-11641(2002.10. 2)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외 3개 지침.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.

5. 검토의견

-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기존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1,316명에 금번 차량등록사업소 및 4공단 투자유치 지원인력, 오리사육장 시설물관리 지원인력 등에 15명을 증원하여 1,331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임.
- 또한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한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.
-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원조례를 바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되 2개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3개국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며

- 허가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폐합하여 허가민원과로, 환경위생과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유사 기능을 조정하여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로 하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임.
- 도시과를 분리하여 도시과와 공원녹지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와 인동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임.
- 기타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부칙중 제2조②항중 제4조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되 ⑤항중 기획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서는 삭제되어야 할 사항임.